제 2 6 2 회 거 창군 의 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2022.3.28.)

조 례 안 일 반 의 안 심 사 보 고 서



거 **창 군 의 회** (총무위원회)

목 차

1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1
2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3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4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5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6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7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0
8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9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1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	46
11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0
12	거창군삶의쉼터 민간위탁 협약서 감면 동의 요구안	77
13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80

의안번호 제2022 - 11호

_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__ _**심 사 보 고 서**__

2022. 3. 28.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2. 3. 8. 권순모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 2022. 3. 10.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권순모 의원]

가. 제안이유

○ 거창군의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스포츠를 통한 군민 여가선용 기회 제공과 이스 포츠 저변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목적에 대해 규정(안 제1조)
- 2) 정의에 대해 규정(안 제2조)
- 3) 군수의 책무에 대해 규정(안 제3조)
- 4)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해 규정(안 제4조)
- 5) 경비지원에 대해 규정(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식)

- 본 조례안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 제5조의 지방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창군의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규정, 이스포츠 추진 관련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 항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 본 조례 제정으로 군민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이스포츠 문화·산업의 기반 조성 및 이스포츠 저변 확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 임: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의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한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주민의 여가 활용을 위한 이스포츠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군수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 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 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
- 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 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 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 · 운영
- 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2022 - 28호

-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___ - **심 사 보 고 서**__

2022. 3. 28.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3.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2022. 1. 13. 시행) 제35조제9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정하여 거창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가) 독립된 자치조례가 아닌 상위법령을 원활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2)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직무 등을 정함 (안 제2조·제3조)

- 가) 위원 위촉 시 복수 추천
- 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대리
- 3) 운영, 간사,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4조~제6조)
 - 가) 서면심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식)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제9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의 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창군의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 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상위법 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 임: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9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 방자치법」 제40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결 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거창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군수는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위촉위원 추천을 받을 경우 복수의 추천을 받는다.
-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운영)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 에게 알려야 한다.
- 제5조(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의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 제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2022 - 29호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2022. 3. 28.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3.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담당관 김성윤]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2022. 1. 13. 시행) 제105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의 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여 거창군수 당선인이 거창군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거창군수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2) 인수위원회 및 자문위원 설치근거를 둠(안 제2조)
- 3) 위원장의 직무, 회의를 정함(안 제3조·제4조)

- 4) 사무직원 및 인력지원을 정함(안 제5조)
- 5) 예산 및 행정 지원, 수당을 정함(안 제6조·제7조)
- 6) 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8조·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식)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5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거창군수 당선인이 군정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 기 위한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 회의, 사무직원 및 인력지원,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상위법 위임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 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 임: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제10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거창군 거창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 인수와 관련한 전문적인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인수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조(회의)** ①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②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사무직원 및 인력지원)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거창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의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인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인수위원회 업무 수행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과 여비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따른다.

제8조(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를 백서로 만든다.

- 1. 예산사용 명세
- 2.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 3. 위원 및 직원 등 성명·직위 등
- ② 백서는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 거창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인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2022 - 30호

_거 창 군 청 년 기 본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__ _**심 사 보 고 서**_

2022. 3. 28.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3.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가. 제안이유

○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여 그들이 거창 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청년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16조의2)
 - 가) 결혼축하금
 - 나) 금융지원
 - 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2) 중복 지원 제한을 정함(안 제16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식)

-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 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청년 결혼축하금 지원, 금융지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사업을 신설하여 어려운 시기 지역 청년을 돕고 청년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 임 1.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신구조문 대비표
 - 3. 비용추계서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① 군수는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후 약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청년에게 예산 범위에서 그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의3(중복 지원 제한)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제1항제1호·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이후 결혼한 사람 또는 노동자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청년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거창에서 살아보기 지원 등

신구조문 대비표

<u>선구소</u> 군 내미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③ (생 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1.~4. (생 략) ⑤~⑦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않도록 한다. 1.~4. (현행과 같음) ⑤~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① 군수 는 청년 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에게 매월 일정 급액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후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금융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청년에게 예산 범위에서 그 주택 전세자금의 대출이자를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3(중복 지원 제한)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과 같은 종류의 지원을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수 없다.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청년 결혼축하금, 청년 디딤돌 통장 지원,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나. 관련조문: 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청년 결혼축하금: 매년 100가구, 3년간 600만원 지원

2) 청년 디딤돌통장: 매년 100명, 2년간 1인당 480만원 지원

3)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매년 50명, 최대 150만원 지원나. 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합계	470	910	1,110	1,110	1,110	4,710
군비	결혼축하금	200	400	600	600	600	2,400
	디딤돌통장	240	480	480	480	480	2,160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30	30	30	30	30	150

3. 관련 의견

청년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결혼축하금과 디딤돌통장 등을 지원 하고자 함

작성자 인구교육과장 옥진숙

의안번호 제2022 - 31호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2. 3. 28.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3.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정현수]

가. 제안이유

○ 일몰이 도래하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및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법령개정으로 자동이체 등 납부에 관한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군민생활 안정 및 지방세납부 편의성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감면기한 연장함(안 제2조·제9조의2)
 - 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 2022. 6. 30.⇒ 2024. 12. 31.

- 나)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 2021. 12. 31. ⇒ 2022. 12. 31.
- 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식)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군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여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붙 임 1.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신구조문대비표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9조의2 중 "2021년"을 각각 "2022년"으로 한다.

제10조 조 제목 중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150원"을 "300원"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300원"을 "6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혀 행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 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 일까지 면제한다.

1. • 2. (생략)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 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 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 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 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 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 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 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 이라 한 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 | 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 지 면제한다.

1. • 2.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제9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 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 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부터 12 소상공인에게 2022년 1월부터 12 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 월까지 건축물 임대료를 3개월 이 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 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 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한다)에 별표에 따른 경감률을 곱 한다)에 별표에 따른 경감률을 곱 한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 금액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률은 임대료 경감한다. 이 경우 경감률은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과 같다.

- 장당 150위
- 고지서 1장당 300원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제10조(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 **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 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 장당 300위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600원

의안번호 제2022 - 32호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인 - **심 사 보 고 서** -

2022. 3. 28.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3.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정현수]

가. 제안이유

○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증명서 12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여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비대면 민원 활성화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군민 편의 증대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확대(안 별표 2)
 - 가)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초본 2종 : 200워⇒면제
 - 나) 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 8종 : 500원⇒면제

(1)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 관계증명서(각 폐쇄증명 포함)

2) 제적등본: 500원⇒면제

3) 제적초본: 300원⇒면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식)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민원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확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으로
- 수수료 면제로 증명서 발급민원의 군민 편의 증대를 위하여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 임: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무인민원증명발급 수수료(제3조 관련)

(단위: 원)

	(
구 분	기 준	금 액	
1) 주민등록등 <u>본·주민등록</u> 초본	1통	200	<u>면제</u>
2) <u>가족관계등록부 등록사항별 증명서</u>	1통	<u>500</u>	<u>면제</u>
3) 제적등본	1통	500	<u>면제</u>
4) 제적초본	1통	300	<u>면제</u>
5) 개별공시지가확인원	1통	500	
	연도 추가	100	
a) E =1(0 a)=1 =1	1통	300	
6) 토지(임야)대장	추가 1장당	10	
7) 건축물대장	1통		300
8) 자동차등록원부	1통		200
9) 건설기계등록원부	1통		300
10) 농지원부(관내)	1통		500
11)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통		500

의안번호 제2021 - 33호

$_-$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_ _ oldsymbol{A}$ $oldsymbol{L}$ $oldsymbol{L}$ $oldsymbol{L}$ $oldsymbol{L}$

2022. 3. 28.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3.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가. 제안이유

○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2002. 5. 9. 제 정하여 휠체어택시를 운영하였으나 2011. 8. 8.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원화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특별교통수단제도를 확대·강화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폐지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식)

-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 (2011.8.8.) 됨에 따라 이원화된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여 교통약자의 복지 증진과 특별교통수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 임: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거창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휠체어택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른 휠체어택시는 「거창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으로 본다.

의안번호 제2022 - 34호

$_-$ 거창군 이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_ _ oldsymbol{A}$ $oldsymbol{L}$ $oldsymbol{L}$ $oldsymbol{L}$ $oldsymbol{L}$

2022. 3. 28.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3.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가. 제안이유

○ 「여성폭력기본법」 제정(2019. 12. 25. 시행)과 「거창군 이동학대 예방 및 피해이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시행 2018. 1. 31.)에 따라 중복재기재에 불과한 내용을 정비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위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목적을 정함(안 제1조)

- 2) 시행계획의 수립 등을 정함(안 제2조)
- 3)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정함(안 제3조~제10조)
 - 가) 설치 및 기능, 위원회 구성
 - 나) 임기, 해촉, 위원장 직무, 위원회 운영, 간사, 운영세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식)

- 「여성폭력기본법」과 「거창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시행에 따라 본 조례를 「거창군 여 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여성 인권 증진과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수립,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일반적인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 법령에 따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 임 :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으로 여 성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창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이하 "여성폭력방지정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추진방향과 기본목표에 맞게 수립해야 한다.
 - ②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추진방향과 기본목표
 - 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 3. 교육 및 홍보
 - 4. 지역협력체계 구축
 -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3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거창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2.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
 - 3. 여성폭력방지정책의 분석·평가
 - 4.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제도개선
 - 5.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 6. 지역사회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
-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 1.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한 거창군 의원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등의 장 또는 그 기관· 시설 등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 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
 - 라. 경찰청, 검찰청,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수사기관 또는 사법 관련 기관
 - 3.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번만 연임할수 있다.
 -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해당 안건 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회피해야함에도 회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 1. 재난·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 2. 안건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한다.
-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2022 - 35호

_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_ _ **심 사 보 고 서** _

2022. 3. 28.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3.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가. 제안이유

○ 학교 체육활동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률을 법령 위임 범위에서 최대한으로 하여 학생의 체육활동을 강화하고 체육시설 사용제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정치나 종교 활동 목적의 사용에 대한 제한 명확화(안 제9조제4호)
- 2) 법령위임범위에서 학교 체육활동에 대한 감경 기준 신설 (안 별표2)

- 가) 근거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나) 감경률: 100분의 80
- 다) 범위
 -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 3) 법령 범위에서 위탁 근거 정비(안 제2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식)

- 거창군 체육시설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학교체육활동에 대한 감경기준을 신설 및 체육시설 위탁 근거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군 관내 체육시설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사항으로
- 조례 조문과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붙임: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경우"를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 등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 조 제목 "(체육시설 위탁·위임)"을 "(체육시설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본문(종전 제1항) 중 "경기단체나 체육단체"를 "단체"로 한다.

별표 2 중 감경률 100분의 80란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수업 또 는 방과 후 활동
-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5호 중 근거법령란에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23조"를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제6조·제8조"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혅 햀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 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 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경우
- 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 는 경우

는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 설의 운영과 관리를 경기단체나 체육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체육시설 소재지 읍·면장에 게 제3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제 16조에 따른 그 소재지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를 위 임한다.

개정안

하나에 해당하면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 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 2. 체육시설의 유지 ·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3.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적당하 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 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4. 정치나 종교 활동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경 우에는 제외한다.
- 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 5.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우 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

제23조(체육시설 위탁·위임) ① 군수 제23조(체육시설 위탁) 군수는 체육시 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 과 관리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 제>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기준

감경대상	감경 률
1.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34조에 따른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 3. 군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나 경기에 출전하기 위한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군이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100 분의 80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감경기준

감경대상	감경 률
1. ~ 5. (현행과 같음)	100 분의 80
5.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신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신설>	

의안번호 제2022 - 46호

_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거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__ _**심 사 보 고 서**_

22022. 3. 28.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3.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재무과장 정현수]

가. 제안이유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동과 경제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계속 확대 됨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사업체에 대 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여 납세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한 감면

- 가) 감면대상 :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현재 거창군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로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의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나목 1)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또는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나목)의 그 밖의 법인
- 나) 감면세목 : 주민세(사업소분)
- 다) 감 면 율 : 기본세율 50% 경감
- 라) 감면기간 : 2022년 (1년)
- 2) 코로나 19 피해 사업장에 대한 감면
 - 가) 감면대상 : 사업소분 주민세 과세기준일 현재 거창군에 사업소(사업소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상)를 둔 사업주로서 코로나 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소
 - 나) 감면세목 : 주민세(사업소분)
 - 다) 감 면 율 : 연면적 세율 50% 경감
 - 라) 감면기간 : 2022년 (1년)
-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가) 감면대상: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중 제1항 시내버스운송사업·농어촌버스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제2항 전세버스운송사업 입·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동차

나) 감면세목: 자동차세

다) 감 면 율: 100% 면제

라) 감면기간 : 2022년 (1년)

4)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대한 감면

가) 감면대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지방세법」제13조 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토지 ⇒「감염병의 예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 합제한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된 경우만 해당

(단. 영업금지 위반하고 불법영업·방역수칙 위반한 경우 제외)

나) 감면세목: 재산세

다) 감 면 율 : 중과세율 (4%) ⇒ 일반세율 (0.2~0.4%)

라) 감면기간 : 2022년 (1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식)

-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코로나19 지방세입 지 원지침 | 에 따라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지역 주민과 사업체에 대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거창군 군세를 감면하기 위해 의 회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에 대한 사업소분 주민세를 기본세율 50% 경감,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에 대 한 사업소분 주민세를 연면적 세율 50% 경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100% 면제, 중과세대상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에 대한 재산세를 일반세율로 감면 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군세 감면을 통하여 관내 사업자와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에 대한 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으로
-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으로 볼 때 군세 감면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22 - 47호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거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_ - **심 사 보 고 서**_

2022. 3. 28.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3.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정현수]

①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1. 제안이유

○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위해 취득한 (구)신 원중학교 일부 부지와 부속건물(체육관)을 활용, 작은학교 살리기 LH공공임대주택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문화·체육시 설 등 생활SOC를 공급하는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 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용도변경

○ 재산개요

구분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면적(m²)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고
취득*	학교용지 및 건물	신원면 과정리 253	12,756	2021. 2. 9.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분할

○ 용도변경

< 당 초 >

연번 소재지 면적 (m²) 용도 비고 1 과정리 253 12,756 노인요양 시설 신축 나눔과

< 변 경 >

연번	소재지	면적 (m²)	용 도	비고
1	과정리 253	10,627	노인요양 시설 신축	행복 나눔과
2	과정리 253-5	2,129	주거플랫폼 구축	미래 전략과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22. ~ 2024.

○ 위 치 : 신원면 과정리 253-5번지 / (구)신원중학교

○ 면 적 : 2,129 m²

○ 사 업 비 : 2,80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체육관 리모델링, 어울림센터·숲도서관 조성 등

다. 추진경과

○ 2021. 5.: 토지주택연구원 공모 컨설팅

○ 2021. 6. : 신원면 주민설명회 개최

○ 2021. 6.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신청

○ 2021. 8. :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 2021년도 지역개발 공모(지역수요 맞춤지원)

^{* 2020}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2020. 8. 18.) / 행복나눔과

라. 향후계획

○ 2022. 3.: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9.: 지역개발사업구역지정 승인 및 고시

○ 2022. 12. : 사업계획(실시계획) 승인 및 고시

○ 2023. 3. : 사업 착공

○ 2024. 3. : 사업 준공

마. 기대효과

- 젊은 가족 인구유입으로 작은학교 폐교위기 탈출, 지역 활력 회복
- 지역소멸 위기의 면지역 정주여건과 실질적 삶의 질 개선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6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참조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 신원면 과정리 253-5번지



2 마리면 공공청사 확장(주차장 조성) 기반 조성

1. 제안이유

○ 향후 마리면 공공청사 확장에 따른 다목적 부지를 매입하여 행정수요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개요

○ 사업기간 : 2022. 3. ~

○ 사 업 비 : 145백만원(군비)/가감정가 반영

○ 사업규모 : 1필지, 2,040 m²

○ 사업내용 : 마리면 공공청사 확장에 따른 다목적 부지 매입

나. 취득재산의 세부내역

(단위: m², 천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기준가격	취득 시기	취득 사유	재 산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준가격 (공시지가)	시기	사유	재 산 소유자
합계		1필지		2,040	34,272			
취득	토지	마리면 말흘리 220-1	답	2,040	34,272 (16,800원)	2022	마리면 공공청사 확장부지 매입	전**

※ 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 영농보상비 별도

다. 추진경과

○ 2018. 02. : 연두 순방 시 행정복합타운 건의

○ 2018. 07. : 주차장 우선 조성 계획 통보(군 → 면)

○ 2018. 09. : 사업부지 5필지 8,637㎡ 중 **1필지 2,126㎡매입**

○ 2019. 04. :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행정절차를 위한 용역 발주

○ 2019. 06. : 마리면 이동군수실 주민 건의(행정복합타운 건립)

○ 2019. 09. :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수립(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19. 12. : 군관리계획 입안(재무과 → 도시건축과)
- 2020. 10. : 마리면 청사부지 추가 매입 건의(마리면 → 재무과)
- 2020. 12. : 거창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용역 완료
- 2021. 2. : 마리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실시설계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공공청사 구역 조정
- 2021. 3. 19. : 부지 매입 완료(말흘리 220-2) / 210백만원
- 2021. 5. 24. : 농업진흥지역 해제 심의결과통보(경남도→거창군)
- 2021. 9.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 2021. 12. : 잔여부지 매도의향서 접수(말흘리 220-1)

라. 향후계획

- 2022. 3. : 2022년 추경예산 편성(부지매입비 등)
- 2022. 4. : 감정평가 및 부지매입
- 농촌협약(농업기술센터 공모사업)을 통해 행정복합타운 추진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 참조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사진설명 : 마리면 말흘리 220-1번지



사진설명 : 마리면 말흘리 220-1번지

③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1. 제안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지구 선정**
 - 교육, 교류, 가공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공 간 조성 및 기 조성된 주변 인프라(농산물가공지원센터, 푸드종합센터 등)와의 연계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 설치
 - 로컬푸드매장,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에 지역농산물을 활용을 위한 가공공장 설치

2. 주요내용

가. 취득(또는 처분) 개요

○ 사 업 명 :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 1335-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 사업내용 : 신활력공유센터 조성

○ 사 업 비 : 4,821백만원(균특 3,375, 도비 434, 군비 1,012)

(단위: 백만원)

구분	계		기	확보		<u>3</u>	확보	비고
	(a=b+c)	소계(a)	2020	2021	2022	소계(b)	2023	기보
계	4,821	4,200	1,000	1,400	1,800	621	621	
균특	3,375	2,940	700	980	1,260	435	435	
도	434	378	90	126	162	56	56	
군	1,012	882	210	294	378	130	130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 취득내용
 - 커뮤니티센터 신축 1동 (지상1층 / 연면적 715m²)
 - 공유 가공공장 신축 1동(지상1층 / 연면적 1,152m²)
- 세부 시설내역 및 소요예산
 - 커뮤니티 센터 : 1,930백만원(2.7백만원/m² 적용)

층별	세부시설	연면적(m²)	용 도
	계	715.00	
	교육장	114.95	평생 교육(농민을 비롯한 지역민 대상)
	동아리방	114.00	각종 동아리 모임 및 회의
1층	공유부엌	291.30	요리수업 및 체험공간 등
	사무실	80.75	시설 관리 및 운영
	공용공간	114.00	복도, 화장실 등 기타

- 공유 가공공장 : 1,382백만원(1.2백만원/m² 적용)

층별	세부시설		세부시설		연면적(m²)	용 도
계		1,152.00				
생산	생산	반찬.소스류	482.40	평생 교육(농민을 비롯한 지역민 대상)		
1층	라인	참기름,고추가루 등	482.40	각종 동아리 모임 및 회의		
	공용공간		187.20	화장실, 샤워장 등 기타		

다. 추진경과

○ 2019. 12.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

○ 2020. 6. : 편입부지 매입 완료(사유지 15필지, A=9,737m²)

○ 2022. 1. : 기본 및 시행계획 승인 고시(거창군 고시 제2022-2호)

라. 향후계획

- 2022. 2. ~ 3.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22. 4. ~ 5. : 「신활력 공유센터 조성」설계공모 및 심사
- 2022. 9. ~ 2023.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교육, 교류, 가공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복합공간 이자 기조성된 주변 인프라(농산물가공지원센터, 푸드종합센 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거점센터 기능 강화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참조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④ 가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1. 제안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지구 선정**
 - 구.가조중학교 가북분교(폐교) 시설(2021. 3. 거창군 매입완료) 리모델링을 통한 **사회복지시설(시설명** : ¹⁾따뜻한 마음센터) 로 용도변경
 - ※¹⁾따뜻한 마음센터 : 노년층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운영 및 지역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활용
 - 가북면 주민의 휴식공간 및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다목적 강당 신축

2. 주요내용

가. 취득(또는 처분) 개요

○ 사 업 명 : 가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가북면 우혜리 1955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3월 ~ 2023년 12월

○ 사업내용 : 따뜻한마음센터 조성(폐교 리모델링) 및 강당 신축

○ 사 업 비 : 4,997백만원(국비 2,798, 도비 360, 군비 1,839)

(단위: 백만원)

그ㅂ	합	계	2021년 이전		2022년		2023년		비고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미끄
계		4,997		1,945	시시게히	1,209		1,698	
국 비	센터 리모델링,	2,798	기본계획	901	실시계획 수립 및 센터	710	센터	1,187	
도 비	기도 같 6, 강당 조성	360	수립	116	l . – : .	91	리모델링, 강당 조성	153	
군 비		1,839		928	00 70	408		503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 취득내용
 - 따뜻한마음센터 리모델링 1동(지상 3층/연면적 1,158.3 m²)
 - 다목적 강당 신축 1동(지상 1층 / 연면적 540.0 m²)
- 세부 시설내역 및 소요예산
 - 따뜻한마음센터(폐교 리모델링) : 1,737백만원(1.5백만원/m² 적용)

층별	세부시설	연면적(m²)	용 도
	계	1,158.3	
	주간보호실(생활실)	223.41	고령층.독거노인 자율생활운영
1층	목욕실, 탈의실	21.63	고당당,국기포한 시골(6월군)
/	공동급식실(조리실)	85.5	급식제공
2층	프로그램실	164.87	입소자 대상 문화프로그램
	복도 등 기타	484.69	
2大	다목적실(동아리)	129.6	센터 내 프로그램 관리 및 사무실
3층	복도 등 기타	48.6	

- **다목적 강당** : **1,674백만원**(3.1백만원/m² 적용)

층별	세부시설	연면적(m²)	용 도
1층	다목적 강당	540.0	체육시설 및 동아리 활동, 축제·행사

다. 추진경과

○ 2019. 9. : 공모사업 선정

○ 2020. 7.: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21. 11. : 기본계획 수립 완료(광계단 및 경남도 승인)

라. 향후계획

- 2022. 2.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22. 3. :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2. 7. : 실시설계용역 완료
- 2022. 8. ~ 2023.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부족한 의료·교육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세대·계층 간 화합의 공간 조성
- 생활기반, 경관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초생활 기능 강화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참조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5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시범포 부지조성

1. 제안이유

- 4차산업혁명시대에 진화하고 있는 스마트팜을 선도하기 위 해서 농업기술센터 내 시범모델 도입 필요
- 현 농업기술센터 유휴 농경지 없어 시범포 부지 마련 필요한 실정임

2. 주요내용

가. 취득 개요

○ 위 치 : 거창읍 대평리 1362-7 등 9필지

○ 편입면적: 10,297 m²

○ 소 유 자 : 이*수 등 7명

○ 사 업 비 : 1,700,000천원(토지매입 354,279,천원/ 공시지가 기준)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0

나. 취득 재산 세부내역

그ㅂ	재산	재	산 소	재 지		기준가격	취득	カニ il O	нгэ
구분	종별	소재지	지목	지적	편입	(천원)	시기	취득사유	비고
계						354,279,200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62-16	답	417.0	417.0	14,428,200	2022	스마트팜 부지조성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1362-7	답	1,021.0	1,021.0	35,326,600	2022	и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66-1	답	1,871.0	1,871.0	64,736,600	2022	u .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59-13	답	1,997.0	1,997.0	67,099,200	2022	ıı .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65-37	답	1,464.0	1,464.0	50,654,400	2022	ıı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1365-22	답	605.0	605.0	20,933,000	2022	"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65-23	답	1,031.0	1,031.0	35,672,600	2022	u .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65-24	답	519.0	519.0	17,957,400	2022	и	
취득	토지	거창읍 대평리 1365-25	답	1,372.0	1,372.0	47,471,200	2022	п	

※ 토지기준가격 = 공시지가 × 면적

다. 추진경과

- 2021. 12 : 2022년 주요업무보고 신규 특수시책 보고
- 2022. 1. 19 : 감정평가 의뢰 2개업체
- 2022. 1. 25 : 토지소유자 입회하에 감정평가

라. 향후계획

- 2022. 3. :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 토지소유자 동의 후 매입 예정
- 2022. 8 : 2차 추가경정예산 부족 매입분 상정 후 매입 예정

마. 기대효과

○ 농가 교육 및 실습 임대까지 가능한 스마트팜 시범포 부지 로 활용으로 농가 소득 증대 기여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참조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사진설명 : 거창읍 대평리 농업기술센터 뒤편 부지 (36답 제외)



사진설명 : 현장 전경

⑤ 「북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건립

1. 제안이유

○ 북상면민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토지취득

2. 주요내용

가. 취득(또는 처분) 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011

○ 취득면적 : 2,400 m² (토지소유자 : 하석돌)/ 계획관리지역

○ 건축규모 : 지상 1층 게이트볼장(연면적 A=999.81m²), 진입로,

주차장 및 부대시설

○ 사업기간 : 2022. 1. ~ 2022. 12.

○ 총사업비 : 1,500백만원

○ 주요기능 : 북상면 갈계리 1109-1(군유지)와 연계하여 북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전체부지 면적 5,022㎡)

나. 취득재산 세부내역

(단위:m², 원)

구분	재산 종별	재 산 의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취득 사유	재 산 소유자
		소	재	지	지목	면 적	기판기국	시기	사유	소유자
계						2400	24,480,000			
취득	토지	북상면	갈계리	1011	전	2,400	10,200	2022	북상면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하석돌

※ 기준가격은 최근 공시지가 기준가격임(본 감정평가 시 변동가능성 있음)

다. 추진경과

- 2020. 9. : 북상면 게이트볼장(전지) 훈련장 조성 건의(북상면)
- 2021. 1 ~ 12. : 부지 선정, 협회 간담회
- 2022. 1 ~ 9. : 실시설계 용역 중

라. 향후계획

- 2022. 01. ~ 03. 부지 매입
- 2022. 09. 설계 용역 완료
- 2022. 09. 사업 착공
- 2022. 12. 사업 완료

마. 기대효과

- 스포츠 인프라 확충으로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으로 노인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숙원사업 해결(읍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완료)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 붙임 참조

붙임

위치도 및 현황사진





7 거창읍 가지리 배수지 증설

1. 제안이유

○ 거창구치소 급수에 따른 용수 수요량 증대로 가지리 배수지를 증설하여 기존급수처 및 신규 급수처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또는 처분) 개요

○ 위 치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가지리 산248-2

○ 취득물건 : 토지(1필지) A=1,298㎡

○ 사업내용

- 사 업 명 : 거창읍 가지리 배수지 증설

- 사업내용 : 배수지 신설 600ton

- 사 업 비 : 1,531백만원

나. 취득(또는 처분)재산 세부내역

(단위 : m², 원)

재산 종별		토지	재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편입 예정면적	사자	가액	소유자
	계		15,843	1,298		4,724,720	
토지	거창읍 가지리 산 248-2	임	15,843	1,298	3,640	4,724,720	이추식

다. 추진경과

- 2021. 12. : 법무부 원인자 부담금 부과 및 납부
- 2021. 12. ~ 2022. 3. : 배수지 증설 실시설계용역 시행

라. 향후계획

- 2022. 3. : 토지매입
- 2022. 4. ~ 12. : 공사 착수 및 준공

마. 기대효과

○ 배수지 증설에 따른 용수공급량 확보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3. 관련법규 및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

4. 위치도 및 현황사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취득 및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① 신원면 신바람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의 건은

- 당초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을 위해 취득한 (구)신원중학교 일부 부지와 부속건물(체육관)의 부지를 활용한 「신바람 신원면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 중 일부 면적(2,219㎡)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하여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를 공급하는 주거플랫폼 구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대상 부지의 용도 변경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2 마리면 공공청사 확장(주차장 조성) 기반 조성의 건은

○ 당해 토지는 2018년부터 마리면 행정복합타운 조성을 위하여 매입을 추진해 오던 사업대상 부지 중 잔여 부지로서 2021. 12월 재산소유자 매도의향서 접수에 따라 사업부지로 협의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 향후 마리면 공공청사 확장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행정수 요에 대응하고 주민 복합 편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 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사업대상 토지 취득의 필요성이 타 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③ 거창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건은

- 당해 부지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지구 선정에 따른 신활력공유센터(커뮤니티센터 신축 1동, 공유 가공공장 신축 1동) 조성에 필요한 사업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대상 부지 주변으로 기 조성된 인프라(농산물가공지원센터, 푸드종합센터 등) 와의 연계를 통한 거점센터 기능 강화와 교육, 교류, 가공 등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사업대상 토지 취득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④ 가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건은

○ 가북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계획 부지인 (구)가조중학교 가북분교 매입 완료로 사업부지 취득과 부지내 사회복지시 설 조성(따뜻한 마음센터로 리모델링)을 위하여 부지를 일부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역 노년층을 위한 시설 조성 및 주민을 위한 다목적 강당 신축에 필요한 사업대상 토지 취득과 용도 변경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5 농업기술센터 스마트팜 시범포 부지조성의 건은

- 당해 부지는 농업기술센터 뒤편에 소재한 농경지로써 농업기 술센터 내 스마트팜 시범포 부지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지(9필지 10,297㎡)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 사업대상 토지의 취득으로 농가 교육 및 실습 임대까지 가능한 스마트팜 시범포 부지를 조성하여 활용 시 향후 선도 농업경영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⑥ 「북상면 전천후 게이트볼장」건립의 건은

- 당해 부지는 북상면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인근 군유지와 연계하여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전체 부지 면적 5,022㎡) 하는데 필요한 일부 개인소유 토지(면적 2,400㎡)를 협의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체육시설 기반이 소외된 면지역에 체육 인프라 확충으로 주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사업대상 토지 취득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음.

7 거창읍 가지리 배수지 증설의 건은

- 당해 부지는 거창구치소 급수에 따른 용수 수요량 증대에 대비한 가지리 배수지 증설에 필요한 사업대상 토지(1필지 1,298㎡)를 취득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배수지 증설로 용수공급량을 확보하여 기존 급수처 및 신규 급수처에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 취득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의안번호 제2022 - 48호

_거창군삶의쉼터 민간위탁 협약서 감면 동의 요구안__ _**심 사 보 고 서**__

2022. 3. 28.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3.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행복나눔과장 이호현]

가. 제안이유

○ 거창군삶의쉼터 수탁법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 재단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인전 입금 감면을 요청함에 따라 2022년 ~ 2023년 동안 한시적 으로 감면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 수탁기간 : 2019. 1. 1. ~ 2023. 12. 31, 5년간)

나. 주요내용

- 1) 위·수탁협약서 내용
 - 거창군삶의쉼터 위·수탁협약서 제7조(비용부담 및 운영비 지원) 제3항

-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제출한 삶의 쉼터 수탁 신청서에서 제시한 법인전입금을 매년 3천만원(30,000,000원)씩 총 5년간 총1억5천만원(₩150,000,000원)을 부담하여야하며, 만약 수탁자가 연도별 법인전입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을 청구할수 있다.

2) 감면내용

- 감면기간 : 2022. 1. 1. ~ 2023. 12.31.(2년간)
- 감면내용 : 연간 3천만원(30,000,000원)의 50% (년간 1천5백만원(15,000,000원)씩, 총 3천만원(30,000,000원) 감면)
- 3) 향후계획
 - 2022. 3. : 거창군삶의쉼터 법인전입금 50%감면 결정 통보
- 4) 예산조치
 - 2022년 예산 변경없이 지원(노인·여성복지관 1,042,125천원, 장애인복지관 1,123,000천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식)

-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거창군삶의쉼터의 수탁법인
 인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코로나19 등으로
 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이 계속됨에 따라 법인전입금 감면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 연간 법인전입금의 50%를 2년간(2022.~2023.) 한시적으로 감면(총 감면액 3천만원)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복지법인이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군 관내 노인 및 여성,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삶의쉼터의 안 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면의 필요성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 되었음.

의안번호 제2022 - 49호

$_-$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민간위탁 동의안 $_ _-$ 심 사 보 고 서 $_-$

2022. 3. 28.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2. 3. 10. 거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22. 3.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22. 3. 23.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이지은]

가. 제안이유

○ 거창 스포츠파크내 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계약이 2022년 7월 31일 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계약 절차를 이행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제1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 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골프연습장을 위탁 운영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위탁대상 : 거창 스포츠파크내 골프연습장 관리 운영

2)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3) 시설물 현황 : 골프연습장 1동, 철탑시설, 부대시설 1식

부지면적		타석수	비거리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구 조		
3,971 m²	지상2층	258.0 m²	300.2m²	철근콘크리트조	10타석	100m

4)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5)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6) 수탁자격: 경기단체, 체육단체 또는 개인

7) 추진일정

○ 군 의회 동의안 제출 : 2022년 1월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2022년 6월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2년 7월

○ 위탁계약 체결 : 2022년 7월

○ 위탁계약 운영 : 2022년 8월

8) 소요예산 : 없음 (골프연습장 사용료로 운영)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진식)

○ 본 동의안은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의 민간위탁기간 만료(2022.7.31.)가 도래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지식을 갖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것으로

- 위탁기간은 3년간이며, 경기단체, 체육단체 또는 개인으로 수탁 자격을 정하여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여 위탁코자 하는 내용으로
-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과 효율적 운영으로 군민 여가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위탁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기재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